

청 원 요 지 서

접 수 번 호	13	접 수 년 월 일	1996.2.22
청 원 인	주소	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1동 363-1 수안빌라 201호	
	성명	장운환 외 224명	주민등록번호
소 개 의 원	이자원의원		
건 명	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과 시유지 점용료 및 불하대금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		
소 관 위 원 회	재무경제위원회		

○ 청원대상 및 위치
 동작구 노량진1동 217-38 일대, 노량진2동 및 상도2동의 일부 국·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촌

○ 청원내용
 - 청원인들은 위 상도제1블랑주택 재개발사업 지구에서 30여년간 거주하여 온 조합원들로서 관할구청에서 '94.8.4. 재개발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한 후
 - '95.12월말 통보된 공유재산 불하가격이 영세서민의 입장에서 볼때 평당 260~39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데다,
 - 관련 법규의 적용으로 지난 5년간의 국·공유지 점용료 및 가산금 등 약 900여만원의 부담과 토지불하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(연리 5~8%) 및 지체시의 이자(연리 15%)를 포함한 약 4,600만원의 부담을 비롯,
 - 이주비 명목으로 시공자로부터 대부(5000여 만원)받은 연리 13%의 원리금(8,000여 만원)상환 등으로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이 입주 불가능한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
 1)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국유재산법시행령,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개정 건의
 2) 토지점용료 소급부과 시정과 토지불하가격 및 이자율 인하 조정 등을 선처해 달라는 청원 내용임.

○ 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의사일정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鄭水華委員님이 잠깐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순서를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의사일정 제6항으로 다루겠습니다.

6. '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(再回附)(서울特別市長 提出)

(16時 59分)

○ 委員長 文錫珍 '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을 상정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○ 李亮漢委員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담당 卓秉伍 室長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?

(「여기 와 계십니다」하는 관계공무원 있음)

○ 委員長 文錫珍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동 안건은 第14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온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.

우선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本會議 자체에서 보류되면서 문제되었던 여러 절차상의 문제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環境管理室長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.

環境管理室長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財務局長 權五虎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

저 쪽에 보류된 주내용이 절차상에 문제를 결했지 않느냐.....

○ 委員長 文錫珍 그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.